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937 발의연월일: 2022. 3. 23.

발 의 자: 송옥주·강득구·김경만

김용민 · 맹성규 · 민병덕

윤관석 • 윤미향 • 이원욱

인재근 · 최종윤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특히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에게는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수급 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15세 이상 17세 이하의 청소년 구직자 역시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과 마찬가지로 수급 요건을 완화하여 지원을 강화할 필요 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 요건에서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대상 연령을 18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개정하여 청소년 구직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제3호).

법률 제 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단서 중 "18세"를 "15세"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취업지원서비스의 수급 요	제6조(취업지원서비스의 수급 요
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건) ①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취업지	
원서비스 수급자격이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	
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	
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한다)의 100분의 100 이하일	
것. 다만, <u>18세</u> 이상 34세 이	<u>15세</u>
하인 사람은 가구단위의 월평	
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0 이하이어야 한	
다.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